24. 12. 16. 오후 2:32 인쇄

동원훈련 입영

동원훈련 입영

동원훈련 연기

입영시 준비사항 및 권익보장

지방청 상담 연락처

동원훈련 우대기관

동원훈련 입영

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(간부/병)

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

장교, 준사관, 부사관: 전역 1~6년차 / 병(兵): 전역 1~4년차

※ 훈련기간: 2박3일

동원훈련 여비지급

입영여비는 훈련이 끝난 후 소집부대장이 퇴소여비 및 훈련보상비와 함께 지급

차량탑승 대상자로 통지된 사람은 거주지에서 차량탑승 장소까지 대중교통 요금만 지급

입영하기 전에 부득이하게 입영여비가 필요한 사람은 입영일 5일전까지

'민원신청 \rightarrow 동원/예비군 \rightarrow 동원훈련 사전 여비지급 신청' 화면에서 신청 **바로가기**

동원훈련 통지서

동원훈련소집통지서는 입영일 40일전까지 등기우편 송부

※ E-mail 또는 모바일앱 수신동의를 한 사람은 입영일 45일전까지 E-mail 또는 모바일앱으로 전송, 5일 이내 미열람시 등기우편 송부

통지서를 분실한 사람은 '민원신청→ 동원/예비군→ 병력동원훈련(전시근로)소집통지서 출력' 에서 출력 가능

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민원신청 \rightarrow 동원/예비군 \rightarrow 「병력동원(훈련)소집 통지서 희망 수령지 신청」화면에서 신청 <u>바로가기</u> 가능

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E-mail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민원신청 \rightarrow 동원/예비군 \rightarrow 「모바일앱·E-mail 병력동원(훈련) 소집통지서 수령 신청」화면에서 신청 **바로가기** 가능

무단불참자 고발처리

동원훈련을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되며,

타인을 대리하여 훈련에 참석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, 속임수를 쓴 본인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됨.

동원훈련과 일반예비군훈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
동원훈련

훈련종류 동원훈련 2박3일

훈련소집권자 지방병무청장

벌 칙 동원훈련연기원 출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보충교육 없이 즉시 고발

예비군훈련 (일반훈련)

훈련종류 동원미참가자훈련, 기본훈련, 작계훈련

훈련소집권자 부대장

벌 칙 3차 무단불참자 : 고발

예비군 교육 훈련시간

구 분			소집훈련	
			훈련유형(시간)	장소
동원예비군훈련 · 병 1~4년차 · 간부 1~6년차	동원기정		동원훈련(2박3일)	소집부대 (또는 동원훈련장)
	동원미지정		기본훈련(4일) 또는 2박3일	
지역예비군훈련	野0	5~6년차	기본훈련(8H) 작계훈련(12H)	지역 예비군훈련장
		7~8년차	기본훈련 (이월된 훈련시간)	
	간부	7년차~연령정년		
예비군훈련 일부 보류자 (대학생 등)			기본훈련(8H)	

동원훈련 지방청 담당연락처 안내

※ 동원훈련 문의(연기, 불참, 교통편 안내 등)은 위의 관할지방병무청으로 문의